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
2025. 4. 10(목) 10:00

제254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

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
(시설관리공단 소관)



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

2025년도 제1회 시설관리공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2682호

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
다. 제출일자 : 2025. 3. 28.

라. 회부일자 : 2025. 3. 28.

2. 제안이유

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「지방자치법」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을 얻고자 함.

3. 추경예산안 편성규모

□ 총 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경정예산액 (A+B)	기정액 (A)	1회추경(안) (B)	비고
계	18,779,572	18,657,501	122,071	
사 업 수 익	18,729,472	18,607,401	122,071	
자 본 적 수 입	50,100	50,100	0	

4. 시설관리공단 추경예산안

(단위 : 천원)

산출근거	최종예산(안)	기정예산	비교증감 (추경요구액)
계	122,071	0	122,071
101-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	69,300	0	69,300
1) 독산배드민턴체육관 인건비 3,300,000원*3명*7월	69,300	0	69,300
201-01 사무관리비	3,049		3,049
1) 사무운영비			
2) 행정사무용품 7,000원*4명*7회	196	0	196
1) 전산소모품			
2) 복사용지 55,000원*3회	165	0	165
1) 소모성비품			
2) 종이컵 11,000원*2상자*2회	44	0	44
2) 정수기위생봉투컵 19,800원*2상자*2회	80	0	80
2) 감열지(자동발권기) 66,000원*4상자	264	0	264
1) 회원카드 구매 1,000원*1,000개	1,000	0	1,000
1) 수업 및 운영물품 800,000원*1회	800	0	800
1) 응급약품 100,000원*2회	200	0	200
1) 현수막 300,000원*1회	300	0	300
201-11 지급수수료	24,167	0	24,167
1) 시설관리 위탁 용역비 1,726,200원*2명*7월	24,167	0	24,167
201-13 임차료	1,001	0	1,001
1) 복합기 렌탈 143,000원*7월	1,001	0	1,001
201-15 복리후생비	600	0	600
1) 현장관리 동·하복 150,000원*4명*1회	600	0	600
201-21 공공요금 및 제세	2,324	0	2,324
1) 정화조 오물수거료 200,000원*1회	200	0	200
1) 사업소분 주민세 500,000원*1회	500	0	500

(단위 : 천원)

산출근거		최종예산(안)	기정예산	비교증감 (추경요구액)
1)통신비				
2)인터넷요금	50,000원*7월	350	0	350
2)전화요금	50,000원*7월	350	0	350
1)전자결재시스템(VPN)이용료				
132,000원*7월		924	0	924
214-05 수선유지비		18,830	0	18,830
1)시설물 수리수선비(안전)	2,000,000원*7월	14,000	0	14,000
1)각종 사인물 교체	3,000,000원	3,000	0	3,000
1)시설안전유지관리				
2)방역소독	200,000원*7회	1,400	0	1,400
2)저수조 청소	430,000원*1회	430	0	430
301-12 기타보상금		2,800	0	2,800
1)환불금	400,000원*7월	2,800	0	2,800

5. 검토의견

-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6억 5,750만 1천원에서 총 1억 2,207만 1천원이 증액되어 경정예산액(안) 187억 7,957만 2천원임.
- 주요 편성 내역은
 - (체육시설 대행사업) 문화환경국 문화체육과 공사·공단경상 전출금을 재원으로 하는 독산배드민턴 체육관 운영비 1억 2,207만 1천원 순증

-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금번 추경예산안은 독산배드민턴구청 직영 전환 이후 발생한 운영 불안정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서,
-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금번 위탁·대행 동의안 및 예산안이 확정되면 차후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시설의 유지관리 및 전반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붙임 : 관계 법령 1부.

지방자치법

[시행 2024. 5. 17.] [법률 제19951호, 2024. 1. 9., 타법개정]

제145조(추가경정예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.

지방재정법

[시행 2025. 4. 1.] [법률 제20871호, 2025. 4. 1., 일부개정]

제45조(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(追加更正豫算)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
1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
2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·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

[전문개정 2011. 8. 4.]